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22누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구합30158 판결
변론종결	2023. 5. 31.
판결선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9.자 취득세 98,110,000원, 지방교육세 8,21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